



재해 개요

- 2020.08.29.(토) 15:30경 ○○ 소속 재해자 △△△(남/유리공)이 보행캐노피 구조물에서 유리를 설치하던 중 발을 헛디뎈 약 4.6m 아래로 추락하여 병원으로 이송해서 치료 중 2020.09.06.(일) 사망한 재해임



재해 발생 원인

- 추락의 방지 시설 미설치
 - 사업주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에서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및 추락 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하나 이를 미설치함
- 개인보호구 미지급
 -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의 경우 안전모와 안전대 등 개인보호구를 근로자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하나 이를 미지급함
- 중량물 작업계획서 미작성 및 교육 미실시
 - 사업주는 중량물의 취급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의 공정, 안전대책을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작업계획서의 내용을 근로자에게 교육을 하여야하나 이를 미실시함



재해 예방 대책

- 추락의 방지 시설 설치
 - 사업주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및 추락 방호망을 설치하여야함
- 개인보호구 지급
 -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의 경우 안전모와 안전대 등 개인보호구를 근로자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함
- 중량물 작업계획서 작성 및 교육 실시
 - 사업주는 중량물의 취급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의 공정, 안전대책을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하고 작업계획서의 내용을 근로자에게 교육하여야함

본 사례는 공공기관 발주공사, 직영, 하청 등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하여 안전보건공단에서 동종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 배포하고 있습니다.